

정 관

2020. 3. 25.

SK 주식회사

전 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24, 2020. 3. 25]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SK 주식회사라 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Holdings Co., Ltd.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5. 6. 26>

제 1 조의 2 (경영철학의 실행)

회사는 지주회사로서의 지속적 가치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철학을 실행하기로 한다. <신

설 2015. 6. 26>

1.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킨다. <개정 2017. 3. 24>
2. 'SK' 상호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명칭, 상징 등 SK Brand 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제목개정 2017. 3. 24]

제 2 조 (사업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26>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3.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3의 2. 주택건설사업 및 국내외 부동산의 개발, 투자, 자문, 운용업
- 3의 3.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사업
4.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 개발사업
5. 수출입대행업, 무역대리업을 포함한 수출입사업
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7.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8.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관련 사업
9. 의약 및 생명과학 관련 사업
10.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1.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조사용역, 생산, 판매, 유통, 컨설팅, 교육, 수출 사업 및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설비의 제공
12. 정보통신사업 및 뉴미디어사업과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수출, 수입, 제조, 유통사업
13. 환경관련 사업
1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15. 전기통신업
16.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7. 정보서비스업
1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 콘텐츠 제작, 유통, 이용 및 관련 부대사업
20.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전기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 전기, 가스공급업 등 에너지사업
23.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 소방시설업
24.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종합시공업
25.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포함한 각종 판매 유통사업
26. 등록번호판발급대행, 검사대행, 지정정비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27.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28. 보험대리점 영업
29. 시설대여업
30. 자동차대여사업
31. 여론조사업
32. 연구개발업
33. 경영컨설팅업
34.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35. 교육서비스업
36. 경비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7. 검사, 측정 및 분석업
38. 기계·장비 제조업 및 임대업 <본호신설, 종전 제 38 호는 제 39 호로 이동 2017. 3. 24>
39.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생산·판매 및 유통·컨설팅·교육·수출입 등 제반 사업 일체 <제 38 호에서 이동 2017. 3. 24.>

제 3 조 (본점·지점)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수행상 필요한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5. 6. 26>

제 2 장 주식

제 5 조 (수권주식과 액면가액)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는 400,000,000 주로 하며, 주식 1 주의 액면금액은 금 200 원으로 한

다. <개정 2015. 6. 26>

제 6 조 (발행주식)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5,000 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2 항 삭제 및 제 1 항 항 번호 삭제 2019. 3. 27>

[제목개정 2019. 3. 27]

제 7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등)

- ①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의 종류는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의 8 종으로 한다.

<본 조 신설 2019. 3. 27>

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이하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총수는 45,000,000 주 이내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름)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최근 3 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④ (1)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2) 종류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

당하거나 또는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금 이외에는 추가로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⑦ 종류주식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위 제 2 항 내지 제 7 항에서 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26>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 1.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도입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하여 제휴업체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삭제 2015. 6. 26>

- ④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5. 6. 26>
-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6>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신설 2015. 6. 26>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 ② 전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7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 수의 100 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삭제 2015. 6. 26>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고, 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항 및 제 2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7. 3. 24>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삭제 <2013. 3. 22>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개정 2019. 3. 27>
-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⑤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주·등록질권자의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 13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 7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7>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 7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7>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5 조 (주권의 재발행)

구주권에 갈음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소정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제 7 조의 2 제 1 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7>

- 1. 구주권을 분실하였거나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주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 2. 주권 손상의 경우에는 그 주권. 단, 식별 불능토록 훼손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3. 주식의 분할, 병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개정 2015. 6. 26>

<제 2 항 삭제 및 제 1 항 항 번호 삭제 2019. 3. 27>

제 16 조 (기준일)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며, 그 외에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 주전에 공고한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삭제 <2020. 3. 25>

제 3 장 사채

제 18 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

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0 에 따라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 6.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하여 제휴업체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8.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0 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5. 6. 26>
 6.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하여 제휴업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되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그 발행 가액은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9. 3. 27>

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1 조 (소집)

-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한다. 각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의 소집통보는 대표이사가 회의일보다 적어도 2주간 전에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2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2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회사 본점 소재지 혹은 인접지역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 23 조 (총회의 의장)

- 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대표이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대표이사가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총회를 주재한다. <개정 2015. 6. 26>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결권)

- ① 각 주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등록된 매 주당 1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삭제 2015. 6. 26>
- ③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각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결의방법)

관련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개정 2015. 6. 26>

제 27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 및 채택된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제 28 조 (이사의 선임)

-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단, 이사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 자격요건, 선임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사외이사에 관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6. 26>
- ③ 이사는 회사의 주주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며,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26>
- 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개정 2015. 6. 26>
- ⑥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 3 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겨 선임된 이사가 3명 미만으로 법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6. 26>
- ② 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26>

제 31 조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회사의 이사는 퇴직 시 회사의 주주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

제 6 장 이사회

제 33 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운영 상의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

제 34 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된다.
- ② 이사회 소집통보는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회의 5 일 전

까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7>

-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 35 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의장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5. 6. 26> <개정 2019. 3. 27>

제 36 조 (결의)

- ① 관련 법령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의 모든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한다. <개정 2015. 6. 26>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회의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 38 조 삭제 <2013. 3. 22>

제 39 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채택된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를 주재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0 조 (위원회)

-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1 조 (기타사항)

이사회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이사회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장 회계

제 42 조 (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영업연도 최종일을 결산기일로 한다.

제 43 조 (회계장부)

- ① 회사의 회계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개정 2019. 3. 27>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

정 2015. 6. 26>

- ② 회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개정 2015. 6. 26>
- ③ 대표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 ④ <삭제 2015. 6. 26>
- ⑤ <삭제 2015. 6. 26>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15. 6. 26>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6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이익배당은 그 지급 개시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 47 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7 월 1 일 0 시 현재의 주주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개정 2015. 6. 26>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5. 6. 26>
- ⑥ 제 46 조 제 3 항은 중간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15. 6. 26>

제 48 조 삭제 <2012. 3. 23>

제 8 장 감사위원회

제 49 조 (감사위원회 위원)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6. 26>
- ③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26>
-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 50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 3. 27>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51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타

제 52 조 (사무절차)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53 조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5. 6. 26>

제 54 조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 3. 25>

부칙 <2010. 3. 12>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0 년 3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 조[공고방법], 제 13 조[명의 개서대리인] 제 5 항, 제 21 조[소집] 제 3 항의 개정 내용은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1 년 3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3>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8 조, 제 18 조의 2, 제 36 조, 제 44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50 조의 개정 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2>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0>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 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6>

이 정관은 2015년 4월 20일 회사와 에스케이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4>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7>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 제 7 조의 2,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9 조의 2 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4 조의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